

의안번호	2125532
의 퇴 인	용혜인의원
회 답 일	2024.2.20.
추계번호	23B480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용자에게 노선버스와 도시철도 이용요금 중 더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연 100회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7,912억원, 2028년 1조 5,693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7조 873억원(연평균 1조 4,175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대중교통비 활성화 지원 사업 (안 제10조의13 신설)	7,912	15,789	15,756	15,724	15,693	70,873	14,175

- 주 1.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이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요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현행 평균 이용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 전년도 지원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개정안의 규정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실제 비용은 동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이용요금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중이나 개정안에 따른 사업 계획이 불확정적이어서 기사업비는 추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3. 추계기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반영하지 않음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의 부칙규정을 고려하여 2024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소요액을 추산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0조의13 신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 ¹⁾ 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제2조제2호가목의 노선버스 또는 제2조제2호나목의 대중교통수단의 기본 이용요금 중 더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연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하여야 함(이하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중교통이용자가 대중교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경우, 그 다음해에는 전년도 지원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지급함. 단, 이 경우 한 해에 지원받는 지원금의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제3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조의13제1항 및 제4항 신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수요증가 폭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중교통 평균이용자에 대하여 연 100회분의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지원할 때 소요 비용을 추산함
	안 제10조의13제3항 신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	· 개정안은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하여 전년 지원 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이 부재하여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와 이들의 이용금액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버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용자에게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이하 생략)

기본 이용요금 중 높은 요금에 대하여 연 100회분 이상의 교통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은 교통비 금액,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교통비 금액과 지원횟수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다음의 가정을 기반으로 비용을 추산함
 - 대중교통이용요금은 연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노선버스와 도시철도 기본 이용요금 중 높은 요금 기준 연 100회분의 이용금액을 지급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함
 - 연간 대중교통이용자 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연간 평균 대중교통이용자 수로 가정하며, 개정안에 따른 수요 증가 효과는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액에 포함되지 않았음
 - 개정안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와 도시철도이며, 기본 이용요금은 도시철도의 기본 이용요금(교통카드 기준)을 지원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함
- 현재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국비),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사업비의 경우, 동 사업이 시행될 경우 중복지원 성격이 있으나(노인·장애인 버스비 지원, 알뜰교통카드 할인사업),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별 대중교통비용 보조 규모, 현행 사업조정 내용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이를 차감하지 않았음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이용자에게 노선버스와 도시철도 기본요금 중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연 100회분의 교통비를 지원할 때 소요비용

가. 대중교통 이용자 수

- 추계대상은 대중교통이용자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선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자 수로 가정함²⁾
- 대중교통이용자 수 실적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2022년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코로나19 감염병 기간 이전의 실적치를 추계에 활용함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인 2024년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이전의 대중교통 이용량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인구 중 대중교통이용 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대중교통이용자 수를 추정함
 - 대중교통이용자 수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이용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일 평균 이용자수를 추정함

[표 2] 대중교통이용자 수: 2017~2022년

(단위: 만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071	1,065	1,071	747	812	876
서울특별시	417	403	408	297	316	333
부산광역시	90	95	99	69	76	83
대구광역시	51	45	47	26	36	38
인천광역시	73	75	72	50	52	60
광주광역시	23	20	20	13	15	15
대전광역시	25	24	24	15	17	19
울산광역시	14	13	13	8	9	10
세종특별자치시	2	2	3	2	2	3
경기도	277	285	274	195	210	224
강원도	8	9	9	5	6	6
충청북도	11	10	10	6	7	8
충청남도	13	12	16	10	11	15

2)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이용요금은 교통카드 실적분을 바탕으로 함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라북도	11	10	11	7	8	9
전라남도	11	11	11	8	9	9
경상북도	15	15	15	8	9	11
경상남도	23	31	31	20	21	25
제주도	6	7	8	5	7	7

자료: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현황조사」 각년도의 평일, 주말 인원의 가중평균한 일평균인원

- 2017~2022년까지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른 인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 시도별 인구현황: 2017~2022년

(단위: 만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5,142	5,163	5,178	5,183	5,174	5,169
서울특별시	974	967	964	959	947	942
부산광역시	342	340	337	335	332	330
대구광역시	245	244	243	241	239	237
인천광역시	293	294	295	295	296	299
광주광역시	150	149	149	148	148	147
대전광역시	153	151	150	149	148	147
울산광역시	116	115	114	114	112	111
세종특별자치시	28	31	34	35	37	38
경기도	1,285	1,310	1,330	1,351	1,365	1,372
강원도	152	152	152	152	152	153
충청북도	161	162	163	163	162	162
충청남도	216	218	219	218	218	219
전라북도	183	182	181	180	179	177
전라남도	179	179	179	179	178	177
경상북도	268	267	267	264	264	262
경상남도	335	335	335	333	331	328
제주도	64	66	67	67	67	6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이동이 제약되었던 기간인 2020~2022년 실적치를 제외한 2017~2019년 전체 인구 중 대중교통이용인구 평균비율을 적용

- 부산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와 같이 총인구 중 대중교통이용인구 비율의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은 2019년도 비율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총인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추계기간 동안 인구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함

[표 4] 총인구 중 대중교통 이용자 비중: 2017~2022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2017~ 2019)
총계	20.8%	20.6%	20.7%	14.4%	15.7%	16.9%	20.7%
서울특별시	42.9%	41.6%	42.3%	31.0%	33.3%	35.4%	42.3%
부산광역시	26.3%	27.9%	29.4%	20.8%	22.7%	25.2%	29.4%
대구광역시	20.9%	18.5%	19.2%	10.9%	15.2%	16.0%	19.6%
인천광역시	24.8%	25.5%	24.5%	16.9%	17.7%	20.0%	24.9%
광주광역시	15.2%	13.1%	13.3%	8.6%	9.9%	10.4%	13.9%
대전광역시	16.7%	15.6%	15.8%	10.4%	11.8%	13.0%	16.0%
울산광역시	12.3%	11.0%	11.3%	7.4%	8.2%	9.3%	11.5%
세종특별자치시	7.5%	6.7%	7.5%	5.1%	6.3%	6.8%	7.2%
경기도	21.6%	21.8%	20.6%	14.4%	15.4%	16.4%	21.3%
강원도	5.1%	6.0%	5.7%	3.3%	3.9%	4.2%	5.6%
충청북도	6.7%	6.0%	6.4%	3.9%	4.2%	5.2%	6.4%
충청남도	6.2%	5.5%	7.1%	4.7%	5.1%	6.6%	7.1%
전라북도	5.9%	5.6%	6.0%	4.1%	4.3%	4.9%	6.0%
전라남도	6.1%	5.9%	6.3%	4.5%	5.1%	5.2%	6.3%
경상북도	5.7%	5.7%	5.7%	3.1%	3.5%	4.3%	5.7%
경상남도	7.0%	9.2%	9.4%	6.0%	6.5%	7.6%	9.4%
제주도	9.0%	11.0%	11.4%	8.0%	10.6%	10.7%	11.4%

자료: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현황조사」와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인 2024~2028년까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인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5] 시도별 인구추계: 2024~2028년

(단위: 만명)

	2024	2025	2026	2027	2028
총계	5,150	5,145	5,140	5,135	5,130
서울특별시	927	921	915	910	905
부산광역시	324	321	318	315	313
대구광역시	232	230	227	225	223
인천광역시	296	296	296	296	296
광주광역시	145	144	143	142	142
대전광역시	145	144	143	142	141
울산광역시	109	109	108	107	106
세종특별자치시	41	43	44	46	47
경기도	1,390	1,400	1,410	1,419	1,427
강원도	152	152	152	153	153
충청북도	164	164	164	165	165
충청남도	219	220	220	221	222
전라북도	175	174	173	172	171
전라남도	175	174	173	172	171
경상북도	261	260	259	258	257
경상남도	326	325	324	323	322
제주도	68	69	69	70	70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예상되는 대중교통이용자 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결과에 총인구 중 대중교통이용자 비중을 곱하여 추산

[표 6] 시도별 대중교통이용인구 추정결과: 2024~2028년

(단위: 만명)

	2024	2025	2026	2027	2028
서울특별시	392	389	387	384	382
부산광역시	95	94	94	93	92
대구광역시	45	45	44	44	44
인천광역시	74	74	74	74	74
광주광역시	20	20	20	20	20
대전광역시	23	23	23	23	23
울산광역시	13	13	12	12	12
세종특별자치시	3	3	3	3	3
경기도	296	299	301	302	304
강원도	9	9	9	9	9
충청북도	10	10	10	10	10
충청남도	16	16	16	16	16
전라북도	10	10	10	10	10
전라남도	11	11	11	11	11
경상북도	15	15	15	15	15
경상남도	31	31	30	30	30
제주도	8	8	8	8	8
합계	1,071	1,069	1,067	1,065	1,0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대중교통 이용요금

- 개정안에 따른 대중교통 기본 이용요금은 노선버스와 도시철도 기본 이용요금 중 더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철을 운행하는 6개 시도에서는 도시철도 요금(성인 현금 기준), 그 밖의 도시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지역별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음

[표 7] 시도별 도시철도 기본요금 현황

(단위: 원)

	전철요금 (성인 카드)	전철요금 (성인 현금)	시내버스 기본요금 (성인 카드)	시내버스 기본요금 (성인 현금)
서울특별시	1,400	1,500	1,500	1,500
부산광역시	1,450	1,550	1,550	1,550
대구광역시	1,500	1,700	1,500	1,500
인천광역시	1,400	1,500	1,470	1,470
광주광역시	1,250	1,400	1,250	1,250
대전광역시	1,550	1,700	1,500	1,500
울산광역시	-	-	1,500	1,500
세종특별자치시	-	-	1,400	1,400
경기도	-	-	1,450	1,450
강원도	-	-	1,469	1,469
충청북도	-	-	1,400	1,400
충청남도	-	-	1,423	1,423
전라북도	-	-	1,107	1,107
전라남도	-	-	1,077	1,077
경상북도	-	-	1,324	1,324
경상남도	-	-	1,219	1,219
제주도	-	-	1,150	1,150

주: 전철료: 성인(기본요금), 시내버스료: 성인(기본요금), 군단위는 농어촌버스 성인 기본요금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현황(2024. 1월 기준)

다. 추계결과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용자에게 노선버스와 도시철도 이용요금 중 더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연 100회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서울특별시	2,939	5,838	5,802	5,767	5,734	26,080
부산광역시	738	1,463	1,450	1,438	1,426	6,516
대구광역시	385	763	756	749	743	3,397
인천광역시	553	1,107	1,107	1,107	1,108	4,983
광주광역시	140	279	278	276	275	1,248
대전광역시	197	392	389	386	384	1,749
울산광역시	95	188	186	185	183	837
세종특별자치시	21	43	45	46	48	203
경기도	2,149	4,328	4,358	4,385	4,411	19,631
강원도	63	125	125	125	125	564
충청북도	73	146	146	147	147	659
충청남도	111	223	224	225	225	1,008
전라북도	58	115	114	113	113	513
전라남도	60	119	118	117	117	531
경상북도	98	196	195	194	194	877
경상남도	187	372	371	370	368	1,669
제주도	45	91	91	92	92	410
합계	7,912	15,789	15,756	15,724	15,693	70,873

- 주 1.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이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요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현행 평균 이용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 전년도 지원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개정안의 규정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실제 비용은 동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이용요금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중이나 개정안에 따른 사업 계획이 불확정적이어서 기사업비는 추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3. 추계기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반영하지 않음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의 부칙규정을 고려하여 2024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소요액을 추산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17~2022년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자, 이용요금 실적치를 바탕으로 추산된 결과로서, 향후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에 따른 수요증가, 행정운영 비용,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추계는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 전년도 지원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개정안의 규정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실제 비용은 동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